

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7863
결재일자	2016.4.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희망복지팀장	복지정책과장	주민생활국장	
이지선	임명희	심수택	04/06 소판수	
협조				

## 2016년 위기가구 발굴·지원 추진계획



성 동 구  
(복지정책과)



# 2016년 위기가구 발굴·지원 추진계획

찾아가는 현장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민·관 협력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·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## I. 추진근거

-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(위기상황의 발굴), 제8조(현장 확인 및 지원)
- 2016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(보건복지부)
-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실행계획서[성동구 자치행정과-11602호(2015. 7. 6.)]

## II. 추진방향

-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
  -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복지플래너, 우리동네주무관, 민간기관, 지역사회 인적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·관리
    - ※ 지역사회 인적자원: 복지통·반장, 복지위원, 마중물보장협의체 등
- 민·관협력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
  -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신속한 연계로 취약계층의 복지체감도 향상

## III. 2015년 추진실적

### 1. '15년 위기가정 발굴·지원 실적

(단위: 건/ 천원)

합계		공공복지서비스 지원		민간복지서비스 지원	
건수	금액	건수	금액	건수	금액
13,360	2,405,886	4,155	1,056,475	9,205	1,349,411

※ 공공복지서비스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국가 긴급복지지원, 서울형 긴급복지지원, 희망온돌, 차상위지원(차상위자활, 차상위장애,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한부모지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(구 우선돌봄차상위)), 푸드마켓

※ 민간복지서비스: 일반기업 후원, 종교단체 후원, 자원봉사단체 후원, 민간(개인)후원, 기타

## 2. '15년 위기가구 발굴·지원 실적 분석

### ○ 잘된 점

- 위기가구 적극적 발굴: 2014년 9,505건 → 2015년 15,000건(57.8% 증가)
- 위기가구 지원 확대
  - ▷ 공공복지서비스: 2014년 2,876건 → 2015년 4,155건(44.4% 증가)
  - ▷ 민간복지서비스: 2014년 3,670건 → 2015년 9,205건(150% 증가)
-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민간자원의 적극적 참여
  - 공공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자원 연계로 복지 체감도 향상

### ○ 부족한 점

- 민간기관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수시 연계할 수 있는 체계 부족

### ○ 개선방안

-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
- 민간기관, 지역사회 인적자원 등과 네트워크 강화
- 지역사회 인적자원의 위기가정 발굴·지원 활동 실적 정기적 점검·관리 실시

## IV. 2016년 추진계획

### 1. 민·관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발굴

#### ○ 복지플래너 및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위기가정 발굴

- 지역사회 인적안전망 적극 활용
  - 대상자별 모니터주기에 따른 연간 방문계획 수립 및 공동방문
  -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복지사각지대 최소화
- 지역사회 인적안전망, 민·관 방문형서비스 담당자와 비상연락체계 구축
-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련 협약 업체를 활용하여 위기가정 발굴 강화 도모

지역사회인적안전망	복지통반장, 복지위원, 마중물보장협의체 등
민관 방문형서비스	노인돌봄서비스,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, 민·관 통합사례관리, 정신·간호·보건서비스, 가스검침원, 가스배달원, 요구르트 직원 등
성동구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협약체결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주)에스코 본사(2015.3.12.)</li> <li>· 도시가스 행당고객센터(2015.3.12.)</li> <li>· 서울시가스판매업 협동조합 성동구지회(2015.3.12.)</li> <li>· 한전산업개발(주) 성동지점(2015.4.3.)</li> <li>· 도시가스 금호고객센터(2015.3.12.)</li> <li>· 도시가스 성수고객센터(2015.3.12.)</li> <li>· 한국전력공사 성동지사(2015.4.3.)</li> </ul>

### ○ 기타 위기가정 발굴 경로 활용

-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·지원 시스템을 통한 발굴
- 보건복지콜센터(129), 복지포털(복지로)에서 이관된 자
- 복지현장상담소, 야간복지상담소 이용자

## 2. 위기가정 지원

### ○ 발굴된 위기가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

- 위기가정 발굴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자격부터 민간지원사업까지 단계별 검토 후 지원
  -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생활보장, 국가긴급복지, 서울형긴급복지,
  - 따뜻한겨울나기기금, 푸드마켓, 민간지원(복지재단, 복지관, 후원자 등)
-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연계
- 공공복지서비스 연계가 곤란한 자에 대해 민간복지서비스 적극 연계
- 동 내부사례회의 및 민·관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연계 지원

## 3. 발굴·지원 결과 관리

### ○ 관리시스템(행복e음, 복지플랜시스템)을 활용하여 대상자 관리

### ○ 월별 위기가정 발굴·지원 실적 관리

- 동 담당자 및 복지위원, 마중물보장협의체, 복지통반장은 위기가정 발굴·지원 활동기록지 제출(매월)

## 4. 홍보 및 교육

### ○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복지서비스 관련 홍보전단지 제작(6월, 1,700부, 동 주민센터 비치)

### ○ 동 관련 단체 회의 시 홍보 및 관내 상점, 영업점 등에 홍보물 배부

### ○ 효율적인 위기가정 발굴·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

- 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정기교육(반기별)
- 복지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(격월)
- 복지통·반장, 마중물보장협의체 대상 동 주민센터 자체 교육(수시)

## V. 행정사항

### ○ 복지정책과

- 위기가정 발굴·지원 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
- 복지담당공무원 대상 정기교육 실시(반기별)
- 복지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(격월)
- 위기가정 발굴·지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및 배부

### ○ 동 주민센터

- 위기가정 발굴·지원 실적 제출(매월 5일한)
- 관리시스템(행복e음, 복지플랜시스템) 입력

- 붙임 1. 저소득층 지원제도 1부.
2. 긴급복지, 서울형긴급복지, 희망온돌 기금 지원내용 1부.
3. 위기가정 발굴·지원 실적 제출 양식 1부. 끝.

## 저소득층 지원제도

지원대상 가구	사 업 명	재 원	수행기관	추진근거	지원 내용
생계급여 중위소득 29% 의료급여 중위소득 40% 주거급여 중위소득 43% 교육급여 중위소득 50%	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	국고보조사업 • 일반수급자 국비:시비:구비 (60:28:12) • 시설수급자 국비:시비 (50:50)	보건복지부 ↓ 서울시 ↓ 성동구	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	• 생계급여 :기초 중위소득29%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• 의료급여 :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,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 • 주거급여 :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• 교육급여 :입학금, 수업료, 교과서대, 학용품비 등 • 해산급여 : 출산시 1인당 60만원 • 장제급여 : 사망시 75만원
기준중위 소득 40%이하	서울형 기초보장제도	전액 시비	서울시 ↓ 성동구	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 제5항 •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조례	• 생계급여 :소득대비 차등급여 -최대지원액 : 맞춤형생계급여 1/2수준 -최소지원액 : 서울형 기초보장 최대 지원액의 1/3수준 • 장제급여, 해산급여 : 기초수급자와 동일
기준중위 소득 75% 이하	긴급복지지원	국고보조사업 국비:시비:구비 (50:25:25)	보건복지부 ↓ 서울시 ↓ 성동구	• 긴급복지 지원법	• 생계비 : 113만원(4인기준) • 의료비 : 300만원 이내 • 주거비 : 62만원(4인기준) • 복지시설이용 : 140만원 (4인기준) • 교육비 초(21만원), 중(34만원), 고(41만원) • 연료비 : 가구당 9만2천원 • 전기요금 : 50만원 이내 • 해산비, 장제비 : 기초수급자와 동일
기준중위 소득 75% 이하	서울형 긴급복지지원	전액시비	서울시 ↓ 성동구	•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조례	• 선지원 : 20만원 이내 • 생계, 주거, 의료 지원 - 1인 가구 : 30만원 이내 - 2인 이상 가구 : 50만원 이내
최저 생계비 200%이 하	희망온돌 위기긴급 지원	민간재원	서울시 복지재단 ↓ 거점기관	• 사회복지사업 법제4조	• 생계, 주거, 난방, 의료, 기타 등 지원(지역가금) : 가구당 30만원 이내 • 주거, 의료 지원(광역가금) : 가구당 500만원 이내
	주거 위기가정 발굴 지원	민간재원	사회복지 협의회	•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	• 의료비, 임차보증금 : 가구당 500만원 이내
	희망마차	민간재원	사회복지 협의회 ↓ 거점기관, 성동구	• 사회복지사업 법제4조	• 식료품, 생활용품, 난방용품 등

## 긴급복지, 서울형 긴급복지, 희망온돌 기금 지원내용

구분	긴급복지 지원	서울형 긴급복지 지원	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지원
근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긴급복지지원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희망온돌프로젝트 추진계획 (시장방침 257호, 2011.12.5.)</li> <li>※ 사회복지사업법(관련법규)</li> </ul>
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</li> <li>• 재산 : 135백만원 이하 (금융재산 500만원 이하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 :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</li> <li>• 재산 : 189백만원 이하 (금융재산 1,000만원 이하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소득 :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</li> </ul>
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9개 항목, 중복 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계비 : 113만원(4인기준)</li> <li>- 의료비 : 300만원 이내</li> <li>- 주거비 : 62만원(4인기준)</li> <li>- 복지시설이용 : 140만원 (4인기준)</li> <li>-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초(21만원), 중(34만원), 고(41만원)</li> </ul> </li> <li>- 연료비 : 가구당 9만2천원</li> <li>- 전기요금 : 50만원 이내</li> <li>- 해산비(60만원), 장제비(75만원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현물 지원 원칙, 현금 지원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선지원 : 20만원 이하</li> <li>- 생계, 주거, 의료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인 가구 : 30만원 이내</li> <li>· 2인 이상 가구 : 50만원 이내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개 항목, 1가구당 1개 분야 지원 가능 (긴급상황 경우 2개 분야 중복 가능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생계, 주거, 냉난방, 의료, 기타 등 지원(지역기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구당 : 30만원 이내</li> </ul> </li> <li>- 주거, 의료 지원(광역기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가구당 : 500만원 이하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횟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항목별 상이 : 1회~12회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회 원칙 (동사례회의에서 결정시 1회 추가지원 가능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기금 : 가구당 최대 4회</li> <li>• 광역기금 : 가구당 1회</li> </ul>
재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년 경과 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 경과 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년 경과 후</li> </ul>
수행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건복지부 → 시 → 자치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서울시 → 자치구 → 동주민센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재단 → 거점기관 (성동·옥수·성수종합사회복지관,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)</li> <li>• 재단 → 자치구</li> </ul>